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연리 1.5%,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신청대상

근로형태별

융자 신청 대상

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근로자

비정규직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자 /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융자종류 및 한도액

융자종류	신청요건	한도액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 한 경우	1,250만원
자녀 학자금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1,000만원 한도 (자녀당 연 500만원)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포함)	1,000만원 한도 (실제 발생비용 내)
부모 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상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0만원(감소임금 내) 한도 '20.12.31.까지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한 경우	500만원 한도 '20.12.31.까지
임금체불 생계비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연간소득액이 5,700만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한도 (체불임금 내 또는 퇴직 전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20.12.31.까지)

융자조건

- ▶ 연리 1.5%
-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1% 신청인 부담)

문의 ·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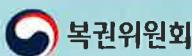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이 사업은 저소득 · 임금체불 등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 지원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사업 안내

“훈련기간 중 최대 2천만원(연1%)까지 장기 저리로 생계비 대부해 드립니다.”

※ 소득요건, 대부한도액, 지원기간은 7.1 ~ 12.31. 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신청대상

대부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중이거나,
훈련종료일 기준으로 7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대부대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업무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외국인·재외동포

📋 세부요건

소득요건

- ▶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자녀

융자한도

- ▶ 월별 최소 50만원~최대 300만원(1인당 총한도 2,000만원)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 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융자조건

- | | |
|--------------------|-----------------------------------------------------------------------------------------------------------------------------------|
| 연 1.0%
(보증료 별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신청자 선택 |
|--------------------|-----------------------------------------------------------------------------------------------------------------------------------|

담보여부

- ▶ 별도 담보없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1.0% 신청인 부담)

신청방법

- ▶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 ② 가구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증명서
- ③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함)

◆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